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적공부 불부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징수 조정금의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금 체납률 감소 및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를 “조정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29조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제13조 관련】

구분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분납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분납횟수	3회 이내	4회 이내	5회 이내	6회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할납부) ① 지적소관청 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u>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u> <u>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u> <u>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u> <u>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u> <u>할 수 있다.</u> ② · ③ (생 략)	제13조(분할납부) ① ----- ----- <u>조정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u> <u>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u>별표</u> 와 같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2</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연 락 처	(044) 201 - 4662